

## 의학전문대학원의무석사학위논문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가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제25조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규정 제16조에서 정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의무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연구 능력이 있는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의무석사학위’라 함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무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 ② ‘의무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논문지도교수’라 한다)라 함은 의무석사학위논문의 연구 과정 및 논문 작성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한다.

### 제2장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

**제3조(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 ① 의무석사학위논문의 관리를 위해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장 및 연구부장보를 보한다.

③ 위원장이 15명 내외의 위원을 추천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의결 기준은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위임 포함)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의무석사학위논문의 연구 과정 평가, 의무석사학위논문계획 및 최종 논문의 심사 및 발표 등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논문의 제반 학사 및 일정을 관리한다.

**제5조(논문연구수업)** ① 위원회는 의무석사학위논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무석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논문 공개 발표회를 포함한 의무석사학위논문 연구수업을 진행한다.

## 2-3-6~2 제2편 학칙

② 일정과 내용은 매학기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논문연구평가) ① 위원회는 의무석사학위논문 논문계획서 및 논문 심사와 별개로 의무석사학위논문 연구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장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회

**제7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승인·위촉한다.

**제8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1인당 매년 2명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9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을 신청하는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해당연도 1학년 1학기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선정을 신청한 자는 논문지도 신청서(별지서식 1),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별지서식 3)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 및 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논문지도비) ① 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에게 의무석사학위논문 지도비를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 의무석사학위논문 지도비의 금액과 지급 기일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① 논문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 및 논문 심사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한 심사위원 추천서(별지서식 5)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에 준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본교 동일 과에 속한 교수가 2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으며 논문지도교수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제13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

수는 심사위원 교체신청서(별지서식7)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장 연구계획서 심사

**제14조**(연구계획서 심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연구계획서(별지서식 4) 및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서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 심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계획서 심사결과서(별지서식 6)에 기입하여 위원장에게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 수정) ① 기 제출된 연구계획서에서 연구 제목을 포함한 주요한 연구계획이 변경된 경우 연구계획 변경서(별지서식8)와 연구계획서(별지서식 4)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 변경은 최종 논문 발표 전까지 가능하다.

#### 제5장 의무석사학위논문심사

**제18조**(논문제출 자격) 의무석사학위논문의 제출 자격은 해당 연도 3학년 2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제19조**(심사용 논문 접수) ① 의무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서(별지서식 9), 심사용 논문 3부, 논문 심사료,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서식 10) 및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 기한 및 논문 심사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논문 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무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서(별지서식 11)에 기입하여 위원장에게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 전원 승인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3-6~4 제2편 학 칙

## 부 칙

- ①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 자기소개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와 인생관, 자신의 장·단점, 특기, 취미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의무석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보고서

학 번 :

성 명 :

논 문 제 목 :

평 가 : 위 학생의 연구계획서를 (승인, 보류)합니다.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 의무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서

학 번 :

성 명 :

논 문 제 목 :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학위논문관리 세칙 제19조에 의거  
의무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기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학력, 인품, 태도 등으로 보아  
의무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도 좋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지도교수                   (인)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장 귀하

※ 심사용 논문 3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것.

(별지서식 제10호)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대학원 /학과		성 명	
지도교수	학과		성 명	
논문제목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약자 :

(인)

확인자 : 지도교수

(인)

가천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 의무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서

학 번 :

성 명 :

논 문 제 목 :

평 가 : 위 원 장 (승인, 보류)

부 위 원 장 (승인, 보류)

위 원 (승인, 보류)

위 학생의 의무석사학위논문을 (승인, 보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장 귀하